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01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구자근・김성원・강승규
김선교・최수진・김승수
박성민・유상범・정동만
박형수・강명구・김도읍
이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

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 등) 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해당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평가, 설비

의 보수·교체, 철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4(풍력발전설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①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 발전사업자는 그 풍력발전 설비의 중대한 보수·교체 및 그 사용종료(철거를 포함한다. 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벌칙)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풍력발전 설비의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2조의3(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 등) 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를 계속 사용하

	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해당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평가, 설비의 보수·교체, 철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4(풍력발전설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①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 발전사업자는 그 풍력발전 설비의 중대한 보수·교체 및 그 사용종료(철거를 포함한다. 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벌칙)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풍력발전 설비의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